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567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5. 2. 23. C에게 300만 원을 대출 기간은 24개월, 대출금리는 연 26.9%, 연체이자율은 연 34.9%로 정하여 신용대출을 하였다. D은 2017. 7. 7.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18. 공시송달로 'C는 원고에게 2,582,133원 및 그중 1,695,845원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의 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1. 24.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F, 피고, C, G가 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1. 26. 망인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28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무자력인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해당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사해 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D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지 않고 그 원리금을 꾸준히 분할상환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C로부터 양수한 위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감소를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등 참조), D은 2015. 2. 23. C와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출금 채권이 발생한 이상, 대출금 채권의 이행기 도래나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위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던 무렵 C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그 당시 C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빌라 중 C의 상속지분인 1/4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군산시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철근콘크리트조라멘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내지 3층 각 358.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라북도 군산시 대 136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라멘조 4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369분의 67.66 끝.

